

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(백지신탁 관리·운용 중인 주식)

신청인 (재산등록 의무자)	성명	(한글)	소속	직위 (직급 등) ()
		(한자)	생년월일	전화번호 (휴대전화) ()
	주소			
직무 내용	(기존)			
	※ 백지신탁 계약체결 당시의 법령·직제·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. (현재)			
	※ 직위가 변경 후의 법령·직제·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.			
심사청구 사유			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귀하

첨부서류	직위 변경전 담당직무와 변경 후의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직제규정, 사무분장 등)와 백지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십시오.
------	--

1. 백지신탁 주식 내역

일련 번호	신탁자	관계	발행인 (주식명)	수량	신탁가액 (천원)	신탁일	신탁기관명	비고 (연락처)

기재요령

1.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(결혼한 딸 제외)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.
2. '발행인(주식명)'란에는 상장주식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(제3시장주식)은 종목명(예: ○○증권, XX전자)을 적고,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기재하십시오.
3. 신탁가액(천원)은 백지신탁계약금액을 기재하십시오.
4. 신탁일과 신탁기관명은 해당 주식을 신탁한 일자와 금융회사를 기재하십시오.
5. 비고란에는 신탁기관 담당자의 연락처(전화번호)를 기재하십시오.